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녹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함

- 안 제17조에 녹색생활 실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근거 제시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을 “(녹색경제·녹색산업·녹색생활에 대한 지원·특례 등)”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녹색기술·녹색산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사업
2. 단독·공동주택, 마을공동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사업
3.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녹색경제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① · ② (생략)	제17조(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생활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는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사업----- ----- -----.
<신 설>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사업
<신 설>	2. 단독 · 공동주택, 마을공동시설의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보급사업
<신 설>	3.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 (생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소관 실·과		녹색정책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이 대 희
	담 당	이 운 균
	담 당 자	전 유 향 (480-6562)